

수 신 : 대구광역시의회 의장

제 목 :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임 :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2023년 11월 17일

대표 발의의원	: 대구광역시의회	김원규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	: 대구광역시의회	김태우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	: 대구광역시의회	류종우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	: 대구광역시의회	박소영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	: 대구광역시의회	박창석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	: 대구광역시의회	손한국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	: 대구광역시의회	이성오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	: 대구광역시의회	이영애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	: 대구광역시의회	이태손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	: 대구광역시의회	임인환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	: 대구광역시의회	전경원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	: 대구광역시의회	정일균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	: 대구광역시의회	하병문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	: 대구광역시의회	하중환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
#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원규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23. 11. 17.

발의의원 : 김원규, 김태우,  
류종우, 박소영,  
박창석, 손한국,  
이성오, 이영애,  
이태손, 임인환,  
전경원, 정일균,  
하병문, 하중환  
의원  
(14명)

## 1. 제안 이유

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

## 2. 주요 내용

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
나. 도심항공교통산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도심항공교통산업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라.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마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### 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※ 시행일 : 2024. 4. 25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도심항공교통”이란 도심의 하늘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일련의 교통서비스 체계를 말한다.
2. “도심항공교통산업”이란 도심항공교통시스템의 개발·건설·운영·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대구광역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**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방향 및 목표

2.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내외 환경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
3.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실증에 관한 사항
4.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실태조사 등)**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6조(육성사업 등)**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,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
2.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
3.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
4.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
5.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